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74호	김예지의의원	2024.6.27.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8.28.) 상 정 후 축조심사
	제3258호	백승아의의원	2024.8.27.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

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추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를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 검진기관은”을 “위탁받은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등에”를 “, 위탁 등에”로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건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1. ----- ----- ----- ----- -----실시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③ -----제1항----- ----- -----

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

④ -----제1항-----

-----.

⑤ -----
위탁받은 공단은-----

-----.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

⑥ (생 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 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u>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u> <u>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u> <u>관한 것으로 한정한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 ----- -----, <u>위탁 등에</u>----- ----- --.
--	--